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4. 12 선고 2020나21536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4. 12 선고 2020나215361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9. 2 선고 2019가단1404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종중회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성, 류호석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종결 2022. 3. 15.

판결선고 2022. 4. 12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. 9. 2. 선고 2019가단1404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 취소. 제1심 판결문 별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8. 4. 11. 접수 제134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(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),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.

원고는 제1심에서 ‘원고는 F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’이라고 주장하였다가,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‘원고는 F의 아들(G, H, I, J) 4파 종손들이 중심으로 된 소종중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 그러나, 이러한 주장은 원고 스스로 제출한 규약 제4조(본회 회원은 A 종원이며 성년된 남자로 구성한다. 본회 회원은 수적 제한 없이 구성한다)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, 그 규약 조항을 기초로 판단한 관련 사건들 판결[K이 원고 대표자로 제기했던 민사사건 판결(을1), 원고 참칭 대표자 Q 관련 형사재판(갑15,21)과 민사재판(갑6) 판결]의 사실인정과 판단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.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이규, 판사 황현찬, 판사 오성우